



승인(협의)번호
제 340005 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Survey on Wages by occupation of SMEs

2016. 10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I 조사 개요

1. 조사개요	3
2. 표본설계	5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8
4. 조사항목 해설	9

II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13
2. 제조부문 생산직 평균 조사노임(일급)	14
1.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14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15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16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17
3. 중소기업 임금현황	24
1. 임금산정 기준	24
2. '16.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	24

부 록

1. 통계표	30
2. 조사표	39

I. 조사 개요

1. 조사명 : 「2016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2. 조사목적

- 매년 6월중 중소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3.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조사연혁

- 1990. 4 경제기획원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실시 권고
- 1990. 9 통계작성승인 제 327-21-07호로 작성승인
- 1991. 5 제1차 중소기업임금실태조사 실시(연2회)
- 1992. 7 작성주기 변경(연2회→연1회)
- 1993. 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4005호)
- 1995. 9 표본 수 확대(850개업체 → 1,000개업체),
조사대상 변경(종업원 5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체 →
종업원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조사대상 임금 변경(1~9월중 월평균 급여액→9월중 급여액)
- 1997. 8 조사 직종 조정(신설 8개, 변경 3개, 폐지 9개)
- 1998. 8 조사항목 변경(신설 5개, 변경 2개, 삭제 7개)
- 1999. 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4005호)
- 2002. 9 조사항목 변경(타 기관 중복항목 정비 등)
- 2003.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실시 항목추가)
- 2004. 9 표본 수 확대(1,000개 업체 → 1,2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통상적 수당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추가)
- 2005. 9 조사항목 변경(월급제 환산방법을 25일 기준 → 정상근로일수
기준으로 변경)
- 2007. 9 조사 직종 조정(신설 1개, 변경 6개, 폐지 1개)

- 2008. 9 조사항목 변경(연봉제, 성과 배분제 폐지),
조사 직종 신설(골판지제조공)
※ 구매기관 대상 「제조부문 직종의 생성·소멸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반영
조사명칭 변경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 2009. 9 조사 직종 조정(초음파절단공 폐지)
- 2013. 9 조사 직종 조정(179개 → 139개)
조사항목 변경(전년도 조사참여 여부 항목추가)
- 2014. 9 표본 수 확대(1,200개 → 1,300개 업체)
조사항목 변경(총근로일수 → 총 월정상근로시간)
- 2015. 7 조사대상 임금 변경(9월 임금 → 6월 임금)
표본 수 확대(1,300개 → 1,500개 업체)
- 2016. 6 조사직종 변경(139개 → 129개)

5. 조사대상

-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인 이상 중소기업
29,752개 업체
※ 한국표준산업 중분류 기준으로 12.담배제조업, 19.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외
- 조사대상 : 1,500개사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업체(Enterprise)

6.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16. 6. 30
- 조사 대상기간 : 2016. 6. 1 ~ 2016. 6. 30
- 조사 실시기간 : 2016. 7. 1 ~ 8. 31

7.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방법을 설명하고 조사업체 응답자(총무, 인사, 노무, 경리, 회계 등)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팩스조사 병행)

8. 조사내용

- 일반사항(기업유형, 노조유무), 임금 산정기준, 6월 급여 등
-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

1. 추출단위(Sampling Unit) : 기업체(Enterprise)

2. 표본틀(Sampling Frame)

- 통계청의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결과 중 종사자 20인 이상 중소기업체를 산업 중류별(22개), 종사자 규모별(4개)로 구분하여 표본 틀 구성

3. 층 화

- 산업 중분류별(22개)로 1차 층화한 후 이를 다시 종사자규모별(4개)로 2차 층화

① 산업중분류(업종별)

10. 식료품	23. 비금속 광물제품
11. 음료	24. 제1차 금속
13. 섬유제품	25. 금속가공제품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6. 목재 및 나무제품	28. 전기장비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1. 기타 운송장비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32. 가구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33. 기타 제품

※ 단 12. 담배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외

② 종사자규모

1규모 (20~49인) 2규모 (50~99인) 3규모 (100~199인) 4규모(200인 이상)

4. 표본크기 결정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추정에 대한 표본오차 관리를 위해 업종·종사자규모별 목표 오차 설정하여 1차 층의 표본크기를 결정
- 추정량의 정도는 각 업종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모에 따라 표본오차의 절대량으로 목표오차를 설정하기 보다는 상대표본오차 개념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사용하여 각 층의 목표오차를 설정

- 각 층의 표본크기는 모집단의 중요변수인 기업체 평균급여액을 고려하여 결정
- 목표오차는 각 산업중분류의 기업체 구성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산업별 구성비가 높을수록 목표오차를 작게 하여 비중이 높은 산업의 오차를 최소화

〈 산업중분류별 목표오차 〉

(단위: 개, %)

업종	기업체수	목표오차
11. 음료	78	7.3%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39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868	7.0%
15. 가죽, 가방 및 신발	279	
16. 목재 및 나무제품	24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437	
32. 가구	540	
33. 기타제품	386	
10. 식료품	1,886	6.3%
13. 섬유제품	1,38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1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9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2,717	
23. 비금속 광물제품	955	
24. 제1차 금속	1,309	
25. 금속가공제품	3,866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04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77	
28. 전기장비	1,908	
29. 기타 기계 및 장비	4,19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96	
31. 기타 운송장비	1,131	

- 업종·종사자 규모별 표본수 결정 공식

$$n = \left(\frac{C}{C_y} \right)^2 / \left[1 + \frac{1}{N} \left(\frac{C}{C_y} \right)^2 \right]$$

여기서, $C = S/\bar{Y}$: 모집단 변동계수(평균급여액)

C_y : 목표오차

N : 업종별·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업체수

5.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에서 업종별·규모별로 층화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할당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적절한 분류변수(종사자수, 급여액)를 선정하여 분류변수에 따라 기업체를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 추출

6. 추정

- 평균급여액 추정

$$\bar{y} = \frac{\sum_h \sum_i w_{hi} y_{hi}}{\sum_h \sum_i w_{hi} x_{hi}}$$

w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가중치

y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임금

x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종사자수

- 평균급여액 추정치 \bar{y} 의 분산추정치

$$\widehat{Var}(\bar{y}) = \sum_{h=1}^H \frac{n_h(1-f_n)}{(n_h-1)} \sum_{i=1}^{n_h} e_{hi}^2$$

N_h : h 층의 모집단 기업체 수

n_h : h 층의 표본 기업체 수

f_n : n_h/N_h

y_{hi} : h 층의 i 번째 표본기업체의 임금

$$w_{..} = \sum_{h=1}^H \sum_{i=1}^{n_h} w_{hi}$$

$$e_{hi} = w_{hi}(y_{hi} - \bar{y}_h \cdot x_{hi})/w_{..}$$

- 평균급여액 추정치 \bar{y} 의 상대표준오차(CV)

$$\widehat{CV}(\bar{y}) = \frac{\sqrt{\widehat{var}(\bar{y})}}{\bar{y}} \times 100$$

3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업종별 · 규모별 모집단 및 표본업체 현황

산업중분류	종사자 규모								전체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 본	모집단	표본		
10.식료품	1,339	41	379	24	135	26	33	14	1,886	105
11.음료	59	20	15	8	3	2	1	1	78	31
13.섬유제품	1,063	23	230	19	77	12	11	5	1,381	59
14.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제품	690	45	123	39	45	14	10	8	868	106
15.가죽/가방/신발	219	26	43	14	14	7	3	1	279	48
16.목재/나무제품	213	20	28	9	3	2	1	1	245	32
17.펄프/종이/종이제품	541	17	127	22	40	14	9	6	717	59
18.인쇄/기록매체복제	363	19	47	12	23	10	4	3	437	44
20.화학물질/화학제품	795	32	231	27	54	13	10	6	1,090	78
21.의료용물질/의약품	119	15	81	13	37	13	2	2	239	43
22.고무제품/프라스틱제품	2,026	22	482	21	165	24	44	9	2,717	76
23.비금속광물제품	745	28	151	19	50	12	9	3	955	62
24.1차금속	912	25	280	17	94	16	23	9	1,309	67
25.금속가공제품	3,089	24	555	20	176	18	46	8	3,866	70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장비	1,298	27	457	35	212	18	81	12	2,048	92
27.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89	35	194	29	67	17	27	7	977	88
28.전기장비	1,360	31	361	25	157	15	30	11	1,908	82
29.기타기계/장비	3,133	24	754	19	267	15	45	9	4,199	67
30.자동차/트레일러	1,546	35	647	22	226	20	77	14	2,496	91
31.기타운송장비	542	42	295	23	234	20	60	10	1,131	95
32.가구	443	21	72	13	19	10	6	6	540	50
33.기타제품	302	30	65	17	19	8	0	0	386	55
합 계	21,486	602	5,617	447	2,117	306	532	145	29,752	1,500

1. 평균 조사노임(일급)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2016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2. 급여체계

- 기본급 : 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 일급,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본봉)
- 통상적 수당 :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 험 수 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 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 격 수 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 족 수 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 속 수 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기타수당 : 기타 고정적인 수당
예)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 정상 근로시간(8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급여총액 :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의 합계액

3. 직종구분

- 생산직 :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에 종사하는 기술·기능·단순근로자
- 사무직 및 기타 : 생산을 제외한 영업, 판매, 총무, 관리, 연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4. 임금산정 기준(단위)

- 시급 : 1시간을 단위로 임률(임금산정의 기준)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일급 : 1일을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주급 : 1주를 단위로 임률을 정하고 정해진 임률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계산·지급
- 월급 : 임금이 월단위로 정하여져 있고 결근일수 등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산정·지급
- 연봉 : 근로자별 능력, 성과(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연간단위로 임금을 결정·지급

〈 참고사항 〉

- ※ 중소기업범위기준 개편(매출액 기준)에 따라 종사자 규모 변경됨(20인~299인→20인 이상 중소기업)
- ※ 2년 연속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은 아래와 같이 통합 또는 삭제함

당 초(2015년)	변 경(2016년)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61. 유리제품 제조원	
124. 컴퓨터 H/W기사	126. 컴퓨터 운용사
125. 컴퓨터 S/W기사	
126. 컴퓨터 운용사	
129. 돌분쇄원	129. 돌분쇄원
130. 착암기조작원	
27. 제정기조작원	직 종 삭 제
49. 리벳팅기조작원	
68. 조선목원	
119. 통신케이블설치 및 수리원	
123. 목공 및 유리공	
132. 인조석가공원	

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 일반특성

- 종사자 규모별 특성은 종사자 20인~49인 규모 기업이 7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인~99인 규모 기업이 18.9%, 100인~199인 규모 기업이 7.1%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일반기업이 83.6%로 혁신형기업 16.4%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 96.4%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3.6% 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대상 일반특성 〉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비 중
중소제조업		29,752	100.0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1,486	72.2
	50~99인	5,617	18.9
	100~199인	2,117	7.1
	200인 이상	532	1.8
기업 유형별	일반기업	24,882	83.6
	혁신형기업	4,870	16.4
노동조합 유무별	노동조합 유	1,058	3.6
	노동조합 무	28,694	96.4

주) 혁신형기업 :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1.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요약

- '16. 6월중 중소기업(20인 이상, 1,500개)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조사노임(일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74,445원으로 전년(72,326원)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작업반장 94,029원 / 제품출하원 71,889원 / 제품검사 및 조정원 67,697원
 단순노무종사원 66,630원 / 수동물품포장원 66,340원 / 특수차운전원 83,850원
 기계정비원 85,904원 / 기계물품포장원 68,489원 / 부품조립원 67,420원
 전기정비원 84,417원 / 용접원 76,501원 / 안전관리사 108,666원

- 조사노임 상·하위 10개 직종

(단위 : 원)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회로설계사	118,472	방직기조작원	63,364
2	안전관리사	108,666	고무제품생산원	65,845
3	제도사	106,949	수동물품포장원	66,340
4	기계설계사	104,559	재봉원	66,495
5	현도사	104,141	단순노무종사원	66,630
6	전기기사	103,045	식품제조원	66,662
7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01,865	철물재단원	66,939
8	컴퓨터웹디자이너	101,562	재봉기운용사	67,231
9	기계기술자	97,000	철강포장원	67,312
10	금속재료품질관리사	96,941	전자제품조립원	67,318

2. 조사노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임
-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조사대상업체가 '16년 6월중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지급액(기본급+통상적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 (직종별) 총 지급액 / 총 월정상근로시간 × 8시간

※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전체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129개 직종의 가중평균임
-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 종사자에서 제외
-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 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7. 1. 1(공표일)

3. 조사노임(일급) 적용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4.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

(단위 : 원)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	기 계 설 계 사	104,559	103,191	기계장치 및 관련 장비의 제조용 시공도와 상세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사람
2	회 로 설 계 사	118,472	115,706	성능과 기능을 갖는 기계의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
3	제 도 사	106,949	105,402	설계도면을 그리거나 캐드 작업을 하는 사람
4	현 도 사	104,141	103,688*	기계 또는 가구의 모양을 그리거나 오토캐드를 이용해 제품제조를 위해 제품설계에 맞게 표시하는 사람
5	강 판 원	77,852	76,984	설계도에 따라 금속판을 절단, 절곡, 천공, 조립, 용접하여 금속 공작 제품을 만드는 사람
6	드릴링기 조 작업	73,809	67,802	드릴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7	공작기계 조 작업	79,158	77,629	로구로, 샤링, 셰이퍼, 스로타 등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8	마 킹 원	72,197	69,119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부위에 선 또는 점을 표시하거나 금을 그어 금속제품을 규격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위치에 표시하는 사람
9	밀 링 기 조 작업	73,353	71,481	다인회전 절삭공구로 금속을 절삭하는 밀링기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10	보 링 기 조 작업	79,152	76,355	보링기를 이용하여 피스톤 등을 보링 또는 가공하는 사람
11	불 반 기 조 작업	-	-	불반기를 이용하여 제품의 구멍을 가공하는 사람
12	절 곡 원	80,800	79,563	수동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품 또는 제품을 절곡하는 사람
13	귀 금속 세 공 원	91,705	89,699*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을 다양한 모양과 용도로 세공하는 사람
14	주 물 원	72,698	71,679	제품 주형 속에 용해한 철 또는 비철금속 등을 부어 주물품을 제작하는 사람
15	단 조 원	70,597	69,437	단조기를 조작하거나 수동으로 두들겨 철 또는 비철금속 제품을 단조하는 사람
16	금 형 원	80,837	79,658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7	목 형 원	82,444*	81,941	주형(주물품)을 만들기 위하여 목재로 형틀을 만들어 재단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토형제작자도 포함
18	조 형 원	74,774	72,747	대량주물을 붓기 위해 주형 목형틀을 넣고 수동으로 점토를 이용해 형태를 만드는 사람
19	압 연 원	88,185	86,423*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2개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 여러 형태로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20	압출기조작원	78,156	77,412	알루미늄 재료나 플라스틱 재료를 봉, 관, 띠 및 기타 제품과 같은 계속적인 형태로 밀어내는 압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21	열처리원	78,816	77,526	용도에 따라 쇠를 가열 또는 냉각하는 사람. 또는 금속열처리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22	용해원	73,215	71,368	공작기계용 부품 등 금속부품을 만들기 위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금속용해로 등을 이용하여 용해하는 사람
23	인발기조작원	77,366*	75,522	일정 직경의 철, 비철금속의 관을 제조하는 인발기계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24	태핑기조작원	68,462*	66,734*	자동 및 수동 태핑기를 이용하여 유리병과 같은 제품에 TAP(나사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
25	판금원	83,130*	82,089*	강판 또는 철판 등으로 제조된 제품의 부분 보수를 하는 사람
26	합금원	81,379	80,390	각종 철 또는 비철금속과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용도에 따라 혼합합금하는 사람
28	다이케스트원	67,969	66,012	정밀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압력을 가해 주조하여 모형을 만드는 사람(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아연 등 경금속을 사용한다.)
29	철물재단원	66,939	65,897	철물제품의 장척과 소요 재료를 재단하거나 절단기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재단하는 사람
30	쇠톱기조작원	68,123	65,572	밴드쏘나 금속쇠톱을 조작하여 수동으로 제작하거나 실 쇠톱을 수동으로 회전시키며 절단하는 사람
31	모형조각기원	83,602	82,088*	모형조각기로 도면상의 모형대로 가공하는 사람
32	절단원	76,986	75,812	설계도면에 의해 금속소재를 조각기, 샤링기 등에 올려놓고 절단하거나 방전기의 등유에 전극과 공작물을 침유시켜 침전가공 하는 사람. 또는 후철판, 봉재 등을 가스와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하거나 가위로 물체를 절단하는 사람
33	프레스기조작원 (자동절단원)	70,665	69,118	알루미늄 압출품을 자동절단 기계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절단절곡성형, 절단천공성형을 하는 사람
34	유리절단 및 재단원	78,282	77,550	유리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및 재단하거나, 각종 유리제품(초, 병, 장식용 등)을 제조하는 사람
35	벤딩머신조작원	73,346	72,153	금속절곡기에 제품을 넣고 구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
36	금속교정원	75,424	70,869	왜곡된 물체를 밸런스머신기 또는 수동으로 두드리거나 열처리하여 교정하는 사람
37	선반원	73,294	71,355	범용 및 CNC선반, 금속자동기계, 범용선반기 등을 조작하거나 수동선반기를 이용하여 절삭가공 등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8	프레나기조작원	71,319	69,696	프레나기와 같은 금속가공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
39	레이저광선원	68,533*	67,642	레이저광선(전자파)를 이용하여 안경테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제품을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40	일 반 화 학 원	92,216	89,921	반응기 등의 화학기계를 사용 화공약품의 첨가 배합 등을 하여 가공하는 사람
41	요 업 원	71,455*	66,108	내화물작업 및 점토제품 생산기를 조작하거나 타일, 위생도기, 식기, 애자류 등의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람
42	합 성 수 지 피 막 원	87,677*	86,426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품 겉 표면에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물 피막을 입히거나 시공하는 사람
43	권 취 원	70,103	68,406*	실이나 필라멘트사가 감긴 드럼이나 보빈을 기계에서 떼어내고 빈 드럼이나 보빈을 장치하는 사람
44	연 선 기 조 작 원	68,697	67,954	인발기를 조절하여 특정 길이의 직경으로 된 금속선을 제조하는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45	신 선 기 조 작 원	74,173	71,982	코일선재를 일련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선재를 가늘게 뽑아내어 신선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6	절 연 원	69,772	68,541	전선 등 제품을 고무테이프절연지, 외권지, 방부성 혼합물 등으로 절연하거나 그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47	피 복 원	70,445*	69,747*	금속 또는 절연체로 케이블의 외피 또는 외장을 하는 사람(알루미늄강대, 철선 외장도 이에 분류한다.)
48	고 무 제 품 생 산 원	65,845	64,242	생고무, 합성고무 등을 배합하여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람 (배합 및 화공약품 첨가 등은 일반화학원으로 분류한다.)
50	용 접 원	76,501	75,031	각종 기계나 금속 구조물 및 압력 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속 재료를 용접기 등으로 열이나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사람
51	연삭기 및 연마기 조 작 원	74,192	72,146	산업용V/V, 자동차용 샷시 제품, 철 구조물, 주물이 완료된 제품 또는 생산품 생산 후 거칠어진 부분을 전동 또는 수동의 그라인더공구 또는 랩핑기, 금속조작기계를 이용하여 연마 또는 가공하는 사람
52	연 마 원 (기 타)	67,911	65,789	페인트류 도장처리 전 또는 연마 전에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FDP를 도포하거나 건조석, 사지 등으로 손질하는 사람. 또는 페인트 흡부 또는 지식연마기를 이용하여 금속칼날, 원통, 렌즈 등을 연마하거나 연마용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을 연마하는 사람
53	세 척 원	73,890	73,575	생산과정 중에 생산된 제품의 청(녹)과 오염부분을 화학물(각종 세척제로)로 표백 또는 세척하는 사람(산제, 유제, 탈지, 아주까리 세제 등이 있음)
54	목 제 품 도 장 원	69,079	65,941	목공 또는 가구 제조원이 만든 가구 및 목제품을 도장하는 사람
55	도 장 원 (취 부)	72,419	70,594	완제품의 내부 및 외부를 취부기구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사람
56	응 용 도 금 기 조 작 원	71,444	70,495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용융액 속에 금속제품을 담그어 표면에 용융액을 부착하게 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57	전 기 도 금 원	75,200*	74,480	전해방식으로 금속물체에 비철금속을 도금하는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
58	플 라 스틱 사 출 기 조 작 원	77,500	76,499	플라스틱 수지를 녹여 실린더에 저장한 후 이를 일정한 압력으로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사출기를 조작하는 사람
59	배 합 원	74,752	73,145	혼합물질을 배합기에서 배합하거나 배합기를 조작하는 사람(내화물 점토 배합도 포함됨)
60	가 구 제 조 원	80,422	77,345	다양한 수공구 및 목공기계를 사용하여 각종 가구를 제작, 장식,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2	제 재 원	73,847	71,272	원목을 각재 또는 판재로 제조하는 사람
63	펄 프 제 조 장 치 조 작 원	71,185	69,806	펄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처리에 의하여 펄프원료를 표백하는 기계, 원료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회전 또는 고정 보일러를 조작하는 사람
64	합 판 제 조 원	68,869	67,988	베니어(단판)의 겹장과 속장을 일렬로 놓고 접착하여 합판을 제조하는 사람
65	제 재 기 계 운 전 원	83,340	81,524	제재소에서 목재를 다듬고 가공하는 목재제재기나 락제재기 등을 조작하는 사람
66	목 재 건 조 기 계 조 작 원	71,456*	68,172	수건, 증기건, 전기건, 고주파방식 등에 의하여 목재를 건조시키는 등 목재건조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67	제 지 원	74,884	74,001	펄프를 원료로 종이, 판지 및 박엽지 등을 제조하는 사람
69	골 판 지 제 조 원	72,581	71,619	판지라이닝을 조작하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사람
70	부 품 조 립 원	67,420	65,657	금속기계부품, 산업용V/V,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부품,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자장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중간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
71	전 기 기 계 조 립 원	77,796	76,278	전신주의 부품이나 형틀을 조립하는 등 교류기기 또는 직류기기를 조립하는 사람
72	중 기 계 조 립 원	-	75,599	가적이 크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중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3	경 기 계 조 립 원	71,001	69,842	실내장치가 가능한 비교적 경한 기계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립하는 사람
74	전 자 제 품 조 립 원	67,318	66,237	가전용 소형 모터, 자동차, 에어컨, 전자부품 등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사람
75	통 신 기 계 조 립 원	79,378	77,079	통신장비에 대한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76	화 학 공 학 제 품 시 험 원	93,530	92,008	화학공학 분야의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7	금 속 재 료 제 품 시 험 원	80,915	80,665	금속 재료 및 제품들의 각 생산라인에서 인장강도 또는 제품상태 등을 측정하는 공학시험을 시행하는 사람
78	전 기, 전 자 및 기 계 제 품 시 험 원	81,510	80,279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79	기 타 공 학 제 품 시 험 원	84,331	82,340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제품을 시험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80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8,024	86,885	화학공학 분야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1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원	92,264	91,243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과정에서 품질의 규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거나 중간 및 완제품의 품질을 평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2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원	82,674	80,059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3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원	82,970	81,863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
84	화 학 공 학 품 질 관 리 사	101,865	99,041	화학공학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5	금 속 재 료 품 질 관 리 사	96,941*	95,529	금속재료 및 제품들의 생산현장에서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내역을 검토하여 집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6	전 기, 전 자 및 기 계 품 질 관 리 사	96,191	94,653	전기, 전자 및 기계제품에 있어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7	기 타 공 학 품 질 관 리 사	95,697	94,080	식품 또는 섬유 등의 기타 공학 분야에서 품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지시하는 관리자
88	기 계 정 비 원	85,904	84,926	생산현장 또는 전문분야의 기계를 점검·분해·보수·정비하는 사람
89	전 기 정 비 원	84,417	82,639	생산현장의 전기제어 및 동작기계의 모터 등과 같은 전기설비를 설치,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0	차 량 정 비 원	88,124	86,167*	차량을 점검·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91	제 품 검 사 조 정 원	67,697	65,404	생산현장에서 제품의 조립 및 수평 등의 밸런스를 조정하거나 마무리 작업 또는 마감 처리하는 사람. 또는 완성제품의 최종검사과 불량여부 검사를 하여 제품을 조정하는 사람
92	기 계 기 술 자	97,000	95,838	기계설비의 건설·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
93	전 선 원	76,762*	72,343*	건축용 PH 파일, 콘크리트 전주에 사용되는 이형철근을 권선기에서 스프링 형태로 제작하거나 변압기 및 기계부품에 코일 및 전선을 감는 사람. 또는 기계설비 장비 설치 등에서 배선 및 단선 보강 등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
94	배 관 원	-	91,745*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공급하는 배관, 연관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사람
95	목 재 포 장 원	70,060	68,531	목재로 파レット 및 나무 상자 등을 제조하여 포장하는 사람
96	기 계 물 품 포 장 원	68,489	67,584	완제품을 규격별로 분류 후 각종 제품을 상품용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97	수동 물품포장원	66,340	64,618	판넬 포장, 비닐, 종이 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종 제품을 상 품용으로 또는 운반시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포장하는 사람
98	철 강 포 장 원	67,312	65,043	완성된 알루미늄 새시를 비닐봉투에 넣는 등의 철제 대강 또는 제철물을 포장하는 사람
99	제 품 출 하 원	71,889	70,635	완성된 제품의 하역 및 적재를 담당하는 사람
100	전 산 용 지 정 합 원	69,996	67,541*	인쇄된 전산용지를 2장 이상 작업 시 한 세트로 정합하는 사람
101	전 자 조 판 원	79,910	77,322	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료를 스캔 하거나 사진이나 그림 인쇄 시 색상(필름)을 분리하는 사람. 또는 스티커 인쇄기 조작, 출판 및 자료편집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사람.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 판을 짜는 사람
102	교 정 사	68,249	66,581	인쇄과정에서 원본과 대조, 확인 작업 하는 사람
103	컴 퓨 터 웹 디 자 이 너	101,562	98,300*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람
104	컴 퓨 터 편 집 사 무 원	95,387	93,999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편집하거나 기획하는 사람
105	인 쇄 기 조 작 원	89,866	88,341	오프셋인쇄기, 활판인쇄기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는 사람 또는 인쇄를 위해 동판, 연판으로 된 인쇄판을 만드는 사람
106	제 본 기 조 작 원	84,345	82,876	제책기계 및 제단 기계를 조작하여 종이를 규격에 맞추어 자르 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
107	전 자 출 판 출 력 원	-	-	전자출판편집기에서 편집과 조판을 실시하고 필름을 출력하는 사람
108	연 포 장 재 접 합 원	77,343	76,821*	금속 은박 및 금박을 넣거나 포장지에 금속 은박을 붙이는 사람 또는 이러한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09	방 직 기 조 작 원	63,364	61,591	생실을 비누나 잣물로 처리 또는 연사기로 가연 또는 합연하는 사람, 또는 직조기 및 편직기를 조작하여 실을 감거나, 정경기를 이용하여 경사를 정경폭과 밀도에 따라 배열 및 감는 사람
110	방 직 기 계 정 비 원	77,875	76,256	방직기계를 유지, 보수 및 정비하는 사람
111	재 봉 원	66,495	65,491	직물, 모피, 가죽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의복이나 기타 직물 제품을 제조하는 재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2	직 물 재 단 사	78,625	77,702	원단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적당한 시접을 두면서 재단기나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사람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일련 번호	직 종 명	2016.6월 조사노임	2015.6월 조사노임	직 종 해 설
113	염 직 원	77,470	75,785	염액에 피염물을 침지시켜 염색하거나 염색기를 조작하는 사람
114	재 봉 기 운 용 사	67,231	65,828	자동재봉틀을 설비하거나 자동재봉틀을 운전하는 사람
115	제 화 원	75,202	73,483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계 또는 수작업으로 가죽신을 제조 또는 수선하는 사람
116	직 포 원	73,207	71,666	제직기를 조작하여 직물(일반직물)을 짜는 사람
117	편 직 원	70,567	69,011	편직기를 사용하여 면장갑, 니트류 등을 짜는 사람
118	피 혁 가 공 원	74,634	73,278	가죽을 가공하거나 모피 또는 양모가 있는 원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120	전 기 기 사	103,045	101,578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로서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121	전 기 산 업 기 사	95,201	94,311	생산현장의 전기기기와 전기제어를 정비, 보수, 유지, 관리하는 전기기술자(자격증 소지)
122	전 기 기 능 사	86,394	85,836	전기기기를 수리 및 보조함으로써 전기기사를 보좌하는 사람(자격증 소지)
126	컴 퓨 터 운 용 사	-	103,552*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거나,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사용자들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사람
127	콘 크 리 트 제 품 성 형 기 조 작 원	82,527	79,849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압축진동성형기를 조작하고 부분적인 고장 등도 보수할 수 있는 사람
128	특 수 차 운 전 원	83,850	80,713	지게차, 레미콘,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129	돌 분 쇄 원	78,695*	73,199*	착암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돌을 재단, 절단, 분쇄 및 연마하는 사람(석공도 이에 분류한다.)
131	소 성 원	71,863	70,032*	성형된 제품을 소성로에서 굽는 작업을 하는 사람
133	폐 수 처 리 원	82,603	80,553	폐수정화기를 조작하거나 찌꺼기 등 오물을 처리하는 등 폐수 처리하는 사람
134	식 품 제 조 원	66,662	65,052	아이스크림, 양념육, 빵, 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135	단 순 노 무 종 사 원	66,630	65,674	유리 이동하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136	작 업 반 장	94,029	91,689	단순노무종사원을 관리하는 반장,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각 현장을 관리, 통솔하는 사람 또는 관리 책임자
137	안 전 관 리 사	108,666	107,249	작업자의 직업적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 또는 안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
138	벨 트 콘 베 이 어 작 업 원	70,290	69,417	양 끝에 장치된 벨트 풀리 사이에 넓적한 이음매 없는 벨트를 구동시키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기계에서 작업하는 사람
139	보 일 러 조 작 원	85,699	84,713	보일러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보일러의 작동상태와 배관상태를 점검하는 사람
전체평균		74,445	72,326	

주) '*' 표시는 조사업체가 5개 미만인 직종 '-' 표시는 조사가 안된 직종으로 유의하여 적용

1. 임금산정 기준

- '16. 6월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을 보면, 생산직은 시급기준(56.8%)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및 기타는 월급기준(50.7%)이 가장 높았음

〈 직종별 임금산정 기준 〉

구 분	시 급	일 급	월 급	연 봉	기 타
생산직	56.8	5.7	26.4	11.1	-
사무직 및 기타	3.0	0.2	50.7	45.9	0.2

2. '16. 6월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

가. 총 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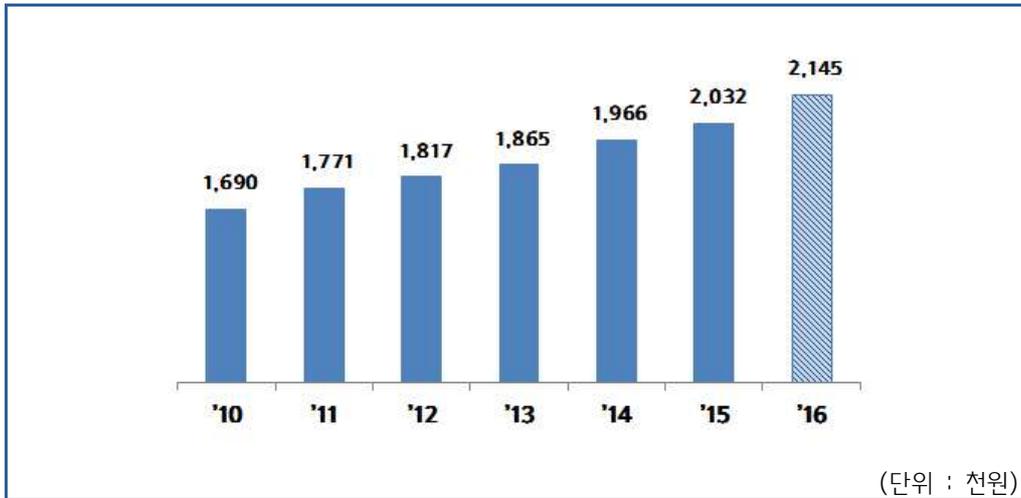
- '16. 6월 중 지급한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는 전년 6월 (2,032천원) 대비 5.6% 상승한 2,14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초과수당과 특별급여가 포함된 월 급여총액은 전년 6월 (2,565천원)대비 3.2% 상승한 2,647천원으로 조사되었음
- 급여내역별로는 기본급은 5.6%, 제수당은 5.2%, 초과근로수당은 3.5%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2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1인당 월급여액 〉

구 분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A+B)	정액급여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
			기본급(A)	제수당(B)		
2015. 6월	2,565	2,032	1,763	269	371	162
2016. 6월	2,647 (3.2)	2,145 (5.6)	1,862 (5.6)	283 (5.2)	384 (3.5)	118 (△27.2)

- 주) 1. 정액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통상적 수당+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임
 2. ()는 2015년 대비 증가율임

〈 연도별 중소기업 정액급여 추이 〉



나. 종사자규모별, 노조유무별 월급여

- 종사자 규모별 월 급여총액을 보면 20~49인 기업이 2,570천원, 50~99인 기업이 2,664천원, 100~199인 기업이 2,722천원, 200인 이상 기업이 2,824천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 노조유무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급여가 2,930천원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2,629천원보다 높게 나타남

〈 종사자규모별, 기업유형별 월급여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월 급여총액 (A+B+C+D)	기본급(A)	제수당(B)	초과근로 수당(C)	특별급여(D)
중소제조업		2,647	1,862	283	384	118
종사자 규모별	20~49인	2,570	1,854	306	325	85
	50~99인	2,664	1,837	268	434	125
	100~199인	2,722	1,896	268	420	138
	200인 이상	2,824	1,903	244	456	221
노 조 유무별	노조 유	2,930	1,909	341	468	212
	노조 무	2,629	1,859	279	379	112

주) 월 급여총액은 기본급과 제수당,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를 합한 금액임

다. 직종별 월급여

- 직종별 월 급여총액을 보면 생산직 종사자는 2,422천원,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는 3,08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 생산직 종사자의 월 급여는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의 월급여의 78.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직종별 월 급여총액 내역을 보면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이 65.4%, 초과근로수당이 19.0%이고, 사무직 및 기타의 경우 기본급 77.7%, 초과근로수당 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기본급 비중은 사무직 및 기타(77.7%)가, 초과근로수당 비중은 생산직 (19.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직종별 월급여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월 급여총액 (A+B+C+D)	기본급(A)	제수당(B)	초과근로 수당(C)	특별급여(D)	급여격차 (사무직및기타 =100)
중소제조업 (20인 이상)		2,647 (100.0)	1,862 (70.3)	283 (10.7)	384 (14.5)	118 (4.5)	-
직 종 별	생 산 직	2,422 (100.0)	1,584 (65.4)	253 (10.4)	461 (19.0)	124 (5.2)	78.6
	사 무 직 및 기 타	3,082 (100.0)	2,396 (77.7)	339 (11.0)	238 (7.7)	109 (3.6)	100.0

주) ()는 월 급여총액을 100으로 한 임금내역별 구성비임.

라. 업종별 월급여액

- 업종별로 월 급여총액을 보면 ‘1차금속’의 월급여가 2,99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비금속광물제품’ 2,814천원, ‘음료’ 2,795천원, ‘전기장비’ 2,778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전체 월평균 급여(2,647천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152천원, ‘식료품’ 2,304천원, ‘기타제품’ 2,380천원 등 8개 업종이었음

< 중소기업 업종별 월급여 >

(단위 : 천원)



부 록

1. 통 계 표
2. 조 사 표

1. '16.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전체)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C	제 조 업	2,647,557	1,862,090	170,795	111,849	384,338	118,486
	20 ~ 49인	2,569,715	1,853,975	186,005	119,712	325,216	84,807
	50 ~ 99인	2,664,509	1,837,344	179,626	88,523	434,071	124,945
	100 ~ 299인	2,721,558	1,896,166	141,762	125,831	419,538	138,261
	300인 이상	2,823,738	1,903,270	130,840	112,720	455,629	221,280
	노동조합 유	2,929,874	1,909,185	208,765	131,751	467,786	212,388
	노동조합 무	2,627,834	1,858,799	168,142	110,458	378,508	111,926
	일반기업	2,623,527	1,844,659	167,918	108,293	381,808	120,849
	혁신형기업	2,783,107	1,960,410	187,025	131,906	398,610	105,156
10	식료품	2,304,049	1,606,456	163,834	138,558	337,870	57,330
11	음료	2,794,956	1,840,969	208,650	128,534	272,930	343,873
13	섬유제품	2,436,096	1,761,436	121,940	103,671	384,699	64,350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2,152,198	1,687,223	100,232	68,186	237,395	59,162
15	가죽, 가방, 신발	2,577,443	1,833,774	146,897	125,350	345,050	126,372
16	목재 및 나무제품	2,425,131	1,799,410	125,190	62,493	253,080	184,95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698,535	1,828,188	202,697	83,600	422,654	161,397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727,937	1,765,362	260,557	135,511	431,830	134,678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742,642	1,988,682	220,675	136,036	292,090	105,159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760,504	2,137,558	152,593	46,179	237,278	186,896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51,181	1,739,902	131,762	89,267	441,614	148,636
23	비금속 광물제품	2,813,641	1,884,971	199,898	125,097	479,976	123,698
24	1차 금속	2,991,334	1,908,081	221,926	133,844	491,308	236,175
25	금속 가공제품	2,673,408	1,896,294	142,437	138,200	377,614	118,86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609,022	1,931,115	138,725	96,344	300,982	141,85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648,790	2,088,333	151,830	84,661	257,256	66,710
28	전기장비	2,778,465	2,034,439	193,007	127,687	327,196	96,135
29	기타기계 및 장비	2,709,428	1,913,866	231,767	104,204	396,954	62,63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702,214	1,810,699	154,276	101,323	456,423	179,494
31	기타 운송장비	2,772,130	1,843,700	148,566	125,486	508,289	146,089
32	가구	2,706,989	1,847,514	195,999	149,807	438,544	75,126
33	기타제품	2,379,756	1,709,084	207,740	128,179	264,177	70,577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1. '16.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생산직)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C	제 조 업	2,421,201	1,583,515	142,837	110,410	460,761	123,679
	20 ~ 49인	2,323,695	1,568,992	148,835	117,142	403,692	85,034
	50 ~ 99인	2,453,283	1,583,869	161,686	82,541	494,241	130,946
	100 ~ 299인	2,508,969	1,607,444	119,531	128,453	507,956	145,585
	200인 이상	2,603,248	1,601,998	106,116	125,209	532,413	237,512
	노동조합 유	2,678,664	1,584,788	197,405	140,704	544,669	211,099
	노동조합 무	2,404,215	1,583,431	139,236	108,411	455,225	117,911
	일반기업	2,417,205	1,578,974	143,525	109,063	459,969	125,673
	혁신형기업	2,447,642	1,613,558	138,279	119,317	466,000	110,488
10	식료품	2,132,276	1,475,585	131,801	136,791	332,976	55,124
11	음료	2,555,335	1,579,908	185,436	111,681	356,216	322,094
13	섬유제품	2,249,216	1,534,741	101,997	111,176	446,600	54,702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1,933,796	1,496,631	99,775	48,758	231,842	56,790
15	가죽, 가방, 신발	2,296,181	1,563,335	124,684	108,083	400,629	99,450
16	목재 및 나무제품	2,307,098	1,643,464	127,605	44,251	281,606	210,17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559,994	1,611,905	163,693	91,427	515,932	177,037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629,474	1,543,478	234,587	151,562	547,277	152,57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469,014	1,648,713	173,673	115,742	412,593	118,293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340,267	1,675,024	134,262	43,307	327,650	160,02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390,971	1,520,658	105,546	70,287	525,512	168,968
23	비금속광물제품	2,564,337	1,594,580	162,643	127,963	568,875	110,276
24	1차 금속	2,846,809	1,631,241	178,244	145,596	647,705	244,023
25	금속가공제품	2,453,760	1,567,198	139,825	167,535	463,054	116,148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278,772	1,600,278	111,468	92,522	336,948	137,557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2,179,107	1,627,863	101,801	101,328	288,971	59,143
28	전기장비	2,359,530	1,588,602	131,784	104,201	420,534	114,409
29	기타기계 및 장비	2,448,544	1,596,624	199,382	99,312	501,115	52,11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561,298	1,570,097	135,610	86,253	557,365	211,974
31	기타 운송장비	2,709,344	1,727,997	147,867	128,081	545,245	160,154
32	가구	2,550,936	1,630,645	136,447	184,862	515,608	83,374
33	기타제품	2,246,374	1,548,326	199,742	130,276	315,861	52,168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1-2. '16. 6월 중 중소기업 월급여 현황(사무직 및 기타)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C	제 조 업	3,081,750	2,396,447	224,425	114,609	237,745	108,525
	20 ~ 49인	3,005,440	2,358,707	251,836	124,263	186,228	84,406
	50 ~ 99인	3,121,651	2,385,924	218,452	101,469	303,848	111,959
	100 ~ 299인	3,141,330	2,466,267	185,660	120,653	244,950	123,799
	200인 이상	3,243,864	2,477,317	177,951	88,922	309,323	190,350
	노동조합 유	3,345,034	2,445,298	227,538	116,955	340,725	214,518
	노동조합 무	3,061,373	2,392,666	224,184	114,427	229,774	100,321
	일반기업	3,046,705	2,389,594	217,948	106,713	221,495	110,956
	혁신형기업	3,233,537	2,426,130	252,475	148,810	308,126	97,996
10	식료품	2,778,120	1,967,645	252,242	143,435	351,378	63,419
11	음료	3,240,989	2,326,912	251,859	159,905	117,900	384,412
13	섬유제품	2,892,988	2,315,670	170,698	85,321	233,360	87,939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2,892,170	2,332,972	101,782	134,011	256,209	67,196
15	가죽, 가방, 신발	3,201,793	2,434,098	196,205	163,681	221,675	186,133
16	목재 및 나무제품	2,859,443	2,373,223	116,305	129,618	148,117	92,18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37,529	2,357,404	298,133	64,447	194,416	123,129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2,930,685	2,222,252	314,032	102,459	194,107	97,835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68,414	2,393,437	276,633	160,197	148,623	89,523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3,280,542	2,709,937	175,278	49,732	125,445	220,149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869,181	2,175,078	183,798	126,940	275,085	108,280
23	비금속 광물제품	3,246,675	2,389,372	264,608	120,120	325,561	147,013
24	1차 금속	3,227,660	2,360,768	293,353	114,629	235,568	223,343
25	금속 가공제품	3,115,529	2,558,715	147,694	79,155	205,635	124,33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3,188,463	2,511,586	186,550	103,052	237,878	149,39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3,248,837	2,676,610	215,745	63,368	216,738	76,377
28	전기장비	3,262,588	2,549,651	263,757	154,828	219,335	75,018
29	기타기계 및 장비	3,124,642	2,418,778	283,310	111,989	231,175	79,38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01,077	2,320,978	193,865	133,284	242,340	110,609
31	기타 운송장비	3,067,175	2,387,407	151,848	113,294	334,630	79,996
32	가구	2,992,162	2,243,821	304,826	85,748	297,716	60,052
33	기타제품	2,727,489	2,128,183	228,589	122,712	129,434	118,570

주) 1. 월 급여총액 = 기본급 + 통상적수당 + 기타수당 + 초과수당 + 특별급여
 2.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2. 임금산정 기준(생산직)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시급	일급	월급	연봉	기타
C	제 조 업	29,752	56.8	5.7	26.4	11.1	-
	2 0 ~ 4 9 인	21,486	53.8	4.3	29.4	12.5	-
	5 0 ~ 9 9 인	5,617	62.7	7.5	20.7	9.1	-
	1 0 0 ~ 2 9 9 인	2,117	67.0	12.7	16.2	4.1	-
	2 0 0 인 이 상	532	70.6	17.8	9.7	1.9	-
	노 동 조 합 유	1,058	45.5	30.6	17.1	6.8	-
	노 동 조 합 무	28,694	57.2	4.8	26.8	11.2	-
	일 반 기 업	24,882	57.6	6.1	26.0	10.3	-
	혁 신 형 기 업	4,870	52.3	3.7	28.8	15.1	-
10	식 료 품	1,886	55.6	4.1	25.3	15.0	-
11	음 료	78	35.5	-	43.7	20.8	-
13	섬 유 제 품	1,381	53.2	2.8	29.7	14.3	-
14	의 복 , 액 세 사 리 , 모 피	868	55.7	10.1	24.6	9.6	-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279	49.0	4.8	31.2	15.0	-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45	49.6	14.3	27.4	8.7	-
17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717	51.6	6.4	36.1	5.9	-
18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437	24.9	0.8	48.3	26.0	-
20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1,090	33.7	7.2	41.7	17.4	-
21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239	11.1	3.8	57.3	27.8	-
22	고 무 및 프 라 스틱 제 품	2,717	68.4	2.4	25.6	3.6	-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955	40.0	4.1	35.3	20.6	-
24	1 차 금 속	1,309	58.9	7.8	30.0	3.2	-
25	금 속 가 공 제 품	3,866	61.2	12.0	15.5	11.4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48	57.4	0.7	25.1	16.8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77	30.7	0.8	37.5	31.0	-
28	전 기 장 비	1,908	54.6	2.4	30.0	13.0	-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4,199	55.6	4.0	31.8	8.5	-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496	81.3	4.1	12.8	1.8	-
31	기 타 운 송 장 비	1,131	60.3	20.5	13.5	5.7	-
32	가 구	540	68.7	5.3	21.1	4.9	-
33	기 타 제 품	386	38.7	11.0	31.0	19.2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3. 임금산정 기준(사무직 및 기타)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시급	일급	월급	연봉	기타
C 제조업	29,752	3.0	0.2	50.7	45.9	0.2
20 ~ 49인	21,486	3.5	0.3	53.2	42.9	0.2
50 ~ 99인	5,617	1.7	-	45.0	52.7	0.5
100 ~ 299인	2,117	1.5	-	42.7	55.7	-
300인 이상	532	1.1	-	42.4	56.5	-
노동조합 유	1,058	3.3	-	52.2	44.5	-
노동조합 무	28,694	3.0	0.2	50.7	45.9	0.2
일반기업	24,882	3.4	0.2	51.7	44.5	0.3
혁신형기업	4,870	0.8	-	46.1	53.1	-
10 식료품	1,886	4.6	-	47.5	47.9	-
11 음료	78	-	3.8	53.1	43.1	-
13 섬유제품	1,381	-	-	63.2	36.8	-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868	2.5	1.8	69.4	26.3	-
15 가죽, 가방, 신발	279	-	-	48.8	48.2	3.0
16 목재 및 나무제품	245	5.6	4.3	43.0	47.0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17	4.4	-	57.1	34.0	4.4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437	4.4	-	43.8	51.8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90	3.8	2.3	42.4	51.4	-
21 의약품 및 의약품	239	-	-	51.4	48.6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717	3.4	-	59.2	37.4	-
23 비금속광물제품	955	3.6	-	53.4	43.0	-
24 1차 금속	1,309	1.3	-	58.8	40.0	-
25 금속가공제품	3,866	10.0	-	51.3	38.7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48	-	-	27.7	72.3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77	-	-	45.6	54.4	-
28 전기장비	1,908	2.8	-	43.0	54.2	-
29 기타기계 및 장비	4,199	-	-	49.4	50.6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96	1.2	-	41.8	55.8	1.2
31 기타 운송장비	1,131	1.6	-	73.8	24.6	-
32 가구	540	4.3	-	74.1	21.6	-
33 기타제품	386	3.6	-	51.7	44.7	-

주) 혁신형기업에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이 해당

[참 고]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전체)

(단위 : 개, 원, %)

구 분	모집단수 N	표본수 n	급여액추정 (\bar{x}_h)	표준오차 SE(\bar{x}_h)	변동계수 RSE(\bar{x}_h)	신뢰하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신뢰상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C 제 조 업	29,752	1,500	2,647,557	21,949	0.83	2,604,501	2,690,614
2 0 ~ 4 9 인	21,486	602	2,569,715	36,695	1.43	2,497,732	2,641,698
5 0 ~ 9 9 인	5,617	447	2,664,509	40,177	1.51	2,585,697	2,743,321
1 0 0 ~ 2 9 9 인	2,117	306	2,721,558	41,657	1.53	2,639,841	2,803,275
2 0 0 인 이 상	532	145	2,823,738	60,393	2.14	2,705,268	2,942,209
노 동 조 합 유	1,058	118	2,929,874	74,667	2.55	2,783,403	3,076,345
노 동 조 합 무	28,694	1,382	2,627,834	22,867	0.87	2,582,978	2,672,690
일 반 기 업	24,882	1,292	2,623,527	23,532	0.90	2,577,365	2,669,689
혁 신 형 기 업	4,870	208	2,783,107	61,232	2.20	2,662,992	2,903,222
10 식 료 품	1,886	105	2,304,049	75,517	3.28	2,155,911	2,452,187
11 음 료	78	31	2,794,956	96,404	3.45	2,605,846	2,984,065
13 섬유 제품	1,381	59	2,436,096	91,387	3.75	2,256,827	2,615,365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868	106	2,152,198	67,631	3.14	2,019,530	2,284,867
15 가죽, 가방, 신발	279	48	2,577,443	94,917	3.68	2,391,249	2,763,637
16 목재 및 나무 제품	245	32	2,425,131	129,596	5.34	2,170,909	2,679,353
17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717	59	2,698,535	140,443	5.20	2,423,037	2,974,034
18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437	44	2,727,937	119,831	4.39	2,492,872	2,963,002
2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1,090	78	2,742,642	75,964	2.77	2,593,627	2,891,658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239	43	2,760,504	131,529	4.76	2,502,492	3,018,516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717	76	2,551,181	68,194	2.67	2,417,409	2,684,953
23 비금속 광물 제품	955	62	2,813,641	110,669	3.93	2,596,549	3,030,734
24 1차 금속	1,309	67	2,991,334	95,488	3.19	2,804,019	3,178,648
25 금속 가공 제품	3,866	70	2,673,408	103,250	3.86	2,470,868	2,875,94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48	92	2,609,022	77,811	2.98	2,456,385	2,761,658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77	88	2,648,790	62,727	2.37	2,525,742	2,771,837
28 전기장비	1,908	82	2,778,465	83,254	3.00	2,615,151	2,941,77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4,199	67	2,709,428	69,106	2.55	2,573,867	2,844,98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96	91	2,702,214	75,841	2.81	2,553,441	2,850,987
31 기타 운송장비	1,131	95	2,772,130	73,434	2.65	2,628,078	2,916,182
32 가 구	540	50	2,706,989	61,122	2.26	2,587,090	2,826,889
33 기타 제품	386	55	2,379,756	72,023	3.03	2,238,473	2,521,039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생산직)

(단위 : 개, 원, %)

구분	모집단수 N	표본수 n	급여액추정 (\bar{x}_h)	표준오차 SE(\bar{x}_h)	변동계수 RSE(\bar{x}_h)	신뢰하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신뢰상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C	29,752	1,500	2,421,201	21,302	0.88	2,379,415	2,462,987
제조업	29,752	1,500	2,421,201	21,302	0.88	2,379,415	2,462,987
20 ~ 49인	21,486	602	2,323,695	32,843	1.41	2,259,269	2,388,121
50 ~ 99인	5,617	447	2,453,283	41,795	1.70	2,371,297	2,535,270
100 ~ 299인	2,117	306	2,508,969	46,387	1.85	2,417,973	2,599,964
300인 이상	532	145	2,603,248	60,479	2.32	2,484,610	2,721,885
노동조합 유	1,058	118	2,678,664	80,757	3.01	2,520,249	2,837,080
노동조합 무	28,694	1,382	2,404,215	22,126	0.92	2,360,812	2,447,617
일반기업	24,882	1,292	2,417,205	22,136	0.92	2,373,781	2,460,628
혁신기업	4,870	208	2,447,642	71,813	2.93	2,306,771	2,588,512
10 식료품	1,886	105	2,132,276	74,441	3.49	1,986,249	2,278,304
11 음료	78	31	2,555,335	78,913	3.09	2,400,536	2,710,134
13 섬유제품	1,381	59	2,249,216	96,639	4.30	2,059,645	2,438,787
14 의복, 액세서리, 모피	868	106	1,933,796	51,602	2.67	1,832,572	2,035,020
15 가죽, 가방, 신발	279	48	2,296,181	105,678	4.60	2,088,878	2,503,483
16 목재 및 나무제품	245	32	2,307,098	148,698	6.45	2,015,404	2,598,791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17	59	2,559,994	143,642	5.61	2,278,219	2,841,769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437	44	2,629,474	138,386	5.26	2,358,010	2,900,93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90	78	2,469,014	75,053	3.04	2,321,787	2,616,242
21 의약품 및 의약품	239	43	2,340,267	107,184	4.58	2,130,010	2,550,524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717	76	2,390,971	84,210	3.52	2,225,781	2,556,162
23 비금속광물제품	955	62	2,564,337	102,377	3.99	2,363,510	2,765,164
24 1차 금속	1,309	67	2,846,809	96,831	3.40	2,656,860	3,036,757
25 금속가공제품	3,866	70	2,453,760	86,978	3.54	2,283,140	2,624,38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48	92	2,278,772	67,022	2.94	2,147,298	2,410,246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77	88	2,179,107	57,449	2.64	2,066,413	2,291,801
28 전기장비	1,908	82	2,359,530	90,221	3.82	2,182,550	2,536,511
29 기타기계 및 장비	4,199	67	2,448,544	58,827	2.40	2,333,146	2,563,94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496	91	2,561,298	80,630	3.15	2,403,130	2,719,466
31 기타 운송장비	1,131	95	2,709,344	80,444	2.97	2,551,541	2,867,146
32 가구	540	50	2,550,936	68,617	2.69	2,416,334	2,685,538
33 기타제품	386	55	2,246,374	71,868	3.20	2,105,395	2,387,352

월평균 급여액에 대한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사무직 및 기타)

(단위 : 개, 원, %)

구 분		모집단수 N	표본수 n	급여액추정 (\bar{x}_h)	표준오차 SE(\bar{x}_h)	변동계수 RSE(\bar{x}_h)	신뢰하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신뢰상한 $\bar{x}_h + 1.96 \times$ SE(\bar{x}_h)
C	제 조 업	29,752	1,500	3,081,750	39,277	1.27	3,004,702	3,158,798
	2 0 ~ 4 9 인	21,486	602	3,005,440	68,970	2.29	2,870,146	3,140,734
	5 0 ~ 9 9 인	5,617	447	3,121,651	63,822	2.04	2,996,455	3,246,847
	1 0 0 ~ 2 9 9 인	2,117	306	3,141,330	64,060	2.04	3,015,667	3,266,993
	2 0 0 인 이 상	532	145	3,243,864	104,301	3.22	3,039,262	3,448,466
	노 동 조 합 유	1,058	118	3,345,034	101,862	3.05	3,145,218	3,544,850
	노 동 조 합 무	28,694	1,382	3,061,373	41,569	1.36	2,979,829	3,142,917
	일 반 기 업	24,882	1,292	3,046,705	44,541	1.46	2,959,331	3,134,079
	혁 신 형 기 업	4,870	208	3,233,537	81,005	2.51	3,074,634	3,392,441
10	식 료 품	1,886	105	2,778,120	128,909	4.64	2,525,245	3,030,994
11	음 료	78	31	3,240,989	153,105	4.72	2,940,651	3,541,327
13	섬 유 제 품	1,381	59	2,892,988	152,815	5.28	2,593,219	3,192,758
14	의 복 , 액 세 사 리 , 모 피	868	106	2,892,170	163,577	5.66	2,571,290	3,213,050
15	가 죽 , 가 방 , 신 발	279	48	3,201,793	140,035	4.37	2,927,094	3,476,492
16	목 재 및 나 무 제 품	245	32	2,859,443	134,361	4.70	2,595,875	3,123,011
17	펄 프 , 종 이 및 종 이 제 품	717	59	3,037,529	159,909	5.26	2,723,845	3,351,213
18	인 쇄 및 기 록 매 체 복 제	437	44	2,930,685	126,412	4.31	2,682,710	3,178,661
20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1,090	78	3,068,414	110,959	3.62	2,850,752	3,286,076
21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239	43	3,280,542	171,747	5.24	2,943,635	3,617,449
22	고 무 및 프 라 스틱 제 품	2,717	76	2,869,181	129,483	4.51	2,615,181	3,123,181
23	비 금 속 광 물 제 품	955	62	3,246,675	147,454	4.54	2,957,423	3,535,927
24	1 차 금 속	1,309	67	3,227,660	135,308	4.19	2,962,235	3,493,086
25	금 속 가 공 제 품	3,866	70	3,115,529	209,436	6.72	2,704,690	3,526,367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2,048	92	3,188,463	143,242	4.49	2,907,473	3,469,454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시계	977	88	3,248,837	91,413	2.81	3,069,517	3,428,158
28	전 기 장 비	1,908	82	3,262,588	119,190	3.65	3,028,780	3,496,395
29	기 타 기 계 및 장 비	4,199	67	3,124,642	122,212	3.91	2,884,905	3,364,379
30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2,496	91	3,001,077	108,899	3.63	2,787,455	3,214,698
31	기 타 운 송 장 비	1,131	95	3,067,175	124,245	4.05	2,823,451	3,310,900
32	가 구	540	50	2,992,162	122,161	4.08	2,752,526	3,231,799
33	기 타 제 품	386	55	2,727,489	128,527	4.71	2,475,364	2,979,614

2016년도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표



지 역	일련번호	산업분류	규 모	전년도 조사
				참 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input type="checkbox"/>

※ 업체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 시 제조부문의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생산직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반드시 귀사의 임금대장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됩니다.

1. 일반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 - □□□□ - □□□□□□
대표자				전 화) □□□□□□□□
주 소				팩 스) □□□□□□□□
종사자수	남(①)	명	여(②)	명	합계(①+②) 명
기업유형	①일반기업 ②이노비즈, 경영혁신, 벤처기업			노동조합	① 유 ② 무

주) 종사자수는 6월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포함,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은 제외)

2. 급여총액(2016. 6월 임금대장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만 대상으로 기재)

(단위 : 명, 원)

직종 구분	상시근로자 ¹⁾	6월 급여총액 ²⁾ (①+②+③+④+⑤)	기본급(본봉) ³⁾ (①)	통상적수당 ⁴⁾ (②)	기타수당 ⁵⁾ (③)	초과근로수당 ⁶⁾ (④)	특별급여 ⁷⁾ (상여금 등) (⑤)
생 산 직							
사무직 및 기타							
합 계							

- 1) 상시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
- 2) 6월 급여총액 2016. 6월 근무에 대하여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총액을 기재
- 3) 기 본 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 본봉을 기재
- 4) 통 상 적 수 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기재 ex) 위험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5) 기 타 수 당 통상적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제 수당을 기재 ex) 통근수당, 연차수당, 월동수당, 급식수당 등
- 6) 초 과 근 로 수 당 정상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재 ex)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 7) 특 별 급 여 급여 관련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기재 ex)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

2-1. 귀사의 임금산정 기준(단위)은 ? ☞ 생산직 () ☞ 사무직 및 기타 ()

- ① 시급 ② 일급 ③ 주급 ④ 월급 ⑤ 연봉 ⑥ 기타()

〈 2016. 6월분 생산직 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일급)현황 작성방법 〉

■ 기본사항

- 1개월 미만 근무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임원), 외국인근로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본 조사에서의 일급은 사업장에서 지급한 2016년 6월분의 기본급과 통상적수당의 합계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
 -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한 기본급 및 통상적수당만 대상으로 임금 산정
- 생산직 근로자가 2가지 이상의 직종을 겸직하는 경우는 모든 직종을 각각 기재

■ 작성예시

▶ A사의 6월 임금 지급 현황

- 갑(기계설계사) : 6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3,120,000원, 통상적 수당 400,000원 지급
- 을(기계설계사) : 6월 한달간 150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1,800,000원, 통상적 수당 150,000원 지급
- 병(밀링기조작원) : 6월 한달간 208시간 근무하여 기본급 2,080,000원, 통상적 수당 200,000원 지급

직종 코드 ¹⁾	직 종 명 ¹⁾ (※ 붙임참조)	총인원 ²⁾		월 정상 근로시간 ³⁾ (①)	총지급액 ⁶⁾ (②+③)	기본급 ⁴⁾ (②)	통상적수당 ⁵⁾ (③)	평균일급 ⁷⁾ (②+③)/① ×8시간	
		소계	남						여
1	기계설계사	2	1	1	358	5,470,000	4,920,000	550,000	122,235
9	밀링기조작원	1	1	0	208	2,280,000	2,080,000	200,000	87,692

- 1) 직 종 코 드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따른 직종분류로 별첨 「제조부문 직종코드 및 직종명」 참조하여 해당 및 직종코드 및 직종명 기재
- 직 종 명 ※ 해당직종이 없는 경우 유사 직종코드를 기재하고, 신규직종은 '직종코드' 란에 "신규"로 기재하고, '신규직종 해설'란에 해당 직종 설명 기재
- 2) 총 인 원 해당직종에 종사하는 총인원수 기재
- 3) 월 정 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정상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유급 등)을 합산한 근로 시간 시간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의 6월 정상근로시간 합계 기재
- 4) 기 본 급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월급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기재
- 5) 통상적수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해당직종 총인원에게 6월 지급된 통상적수당 합계 기재
- 6) 총 지 급 액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의 합계
- 7) 평 균 일 급 해당 직종 총인원의 6월 기본급 및 통상적 수당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평균 일급 계산

【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2016년도 최저임금 : 시급 6,030원, 일급 48,240원(8시간기준)

2016년 중소기업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발행일 : 2016년 월 일

발행인 : 박 성 택

발행처 : 중소기업중앙회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전 화 : 02) 2124-3150~3157

F A X : 02) 786-2037

인터넷 : <http://stat.kbiz.or.kr/>

E-Mail : stat@kbiz.or.kr

인 쇄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